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연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38

발의연월일: 2020. 7. 13.

발 의 자:최연숙・인재근・권은희

김승수 · 한무경 · 김상훈

윤두현 • 이태규 • 윤희숙

권영세・김석기・金炳旭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,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대응체계에 미흡한 점이 다수 확인되었음.

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단기간에 급속도로 발생했을 때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병실, 의약품, 장비 등 기본적인 방역자원은 물론 숙련된의료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방역에 한계를 노출했고, 정부와 의료기관,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필요한 정보가 즉각적으로 공유되지 못함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었음. 아울러 의료인 등 방역업무 종사자들은 교대 인력이 충분하게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로 인해 극도의 피로감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실정임.

또한 어린이·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은 물론 이들과의 접촉이 빈번 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지급 등에 대한 규 정이 없어 감염 발생 위험이 높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 의무를 강화, 방역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, 감염취약계층 등에 대한 마스크 지급 등으로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"감염병 예방·관리 및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신체적·정신적 보호 및 치료"를 포함하고, 그 경비를 국가와 시·도가 부담하도록 함(안 제4조제2항제8호의2, 제65조제8호의2 및 제67조제11호 신설).
- 나.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"노인복지시설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"과 "제1급감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에 대응할 의료인 양성 및 수급 방안"을 추가함(안 제7조제2항제3호의3·제3호의4 신설).
- 다.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발생 시 예방·관리·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·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의료인력, 의약품·의약외품·장비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함(안 제40조의4신설).
- 라.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의료요원을 동원할 때에 의료요원이 소진되지 아니 하도록 업무시간과 휴게

시간, 휴일 등을 특별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조치하도록 함(안 제49조제3항·제4항 신설).

- 마. 사회복지시설 미이용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게도 마스 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9조의2제1항).
- 바. 감염병의 발생 감시, 예방·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 인 또는 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 을 강화함(안 제70조의3제1항).
- 사.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 규정에 "심리상담지원"을 추가함 (안 제70조의4제1항).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2항제8호 중 "예방"을 "예방·관리 및 치료 등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1호 중 "관리사업"을 "예방 및 관리사업"으로 한다.

- 8의2. 감염병 예방·관리 및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신체적·정신적 보호 및 치료
- 제7조제2항에 제3호의3 및 제3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3의3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
 - 3의4. 제1급감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에 대응할 의료인 양성 및 수급 방안
- 제40조제1항 중 "의약품"을 "의약품·의약외품"으로 한다.
- 제40조의2 중 "의약품"을 "의약품·의약외품 및 장비"로 한다.
-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40조의4(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발생 시 예방·관리·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·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감

염병환자등 및 의료인력, 의약품·의약외품·장비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(이하 "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 관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·관리·보유할 수 있으며, 관련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따라야 한다.
- 1.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고 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)
- 2. 감염병 치료내용 등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 예방·관리·치료 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
-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다.

제49조제1항제12호 중 "의료관계요원"을 "의료관계요원(이하 이 조에서 "의료요원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

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 12호에 따라 의료요원을 동원할 때에 의료요원이 소진되지 아니하도록 업무시간과 휴게시간, 휴일 등을 특별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의료요원의 종류, 동원의 기간, 절차, 업무 및 근로계약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9조의2제1항 중 "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, 노인 등"을 "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,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등"으로 한다. 제65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의2. 시·도지사가 감염병 예방·관리 및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신체적·정신적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비제67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11. 국가가 감염병 예방·관리 및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신체적·정신적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비제70조의3제1항 중 "할 수 있다"를 "하여야 한다"로 한다. 제70조의4제1항 중 "생활지원"을 "생활지원, 심리상담지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	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
책무) ① (생 략)	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	②
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	
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	
야 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감염병 <u>예방</u> 을 위한 전문인	8 <u>예방·관리 및 치료</u>
력의 양성	<u> </u>
<u><신 설></u>	8의2. 감염병 예방·관리 및 치
	료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
	인력의 신체적·정신적 보호
	<u>및 치료</u>
9. • 10. (생 략)	9. • 10. (현행과 같음)
11. 감염병 <u>관리사업</u> 의 평가	11예방 및 관리사업
12. ~ 17. (생 략)	12. ~ 17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	제7조(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
의 수립 등) ① (생 략)	의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2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3의2. (생 략)	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3의3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제

<신 설>

4. ~ 6. (생략)

③ ~ ⑤ (생 략)

제40조(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)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 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·치료 의약 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

제40조의2(감염병 대비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)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감 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 유행에 대비하여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하거나 생산한 <u>의약품</u> 공급의 우선순

	1호 및 제 2 호에 따른 노인복
	지시설 감염병 위기대응역량
	의 강화 방안
	3의4. 제1급감염병의 발생 또는
	유행에 대응할 의료인 양성
	및 수급 방안
	4. ~ 6. (현행과 같음)
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	40조(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
	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)
	①
	의약
	품·의약외품
	·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	40조의2(감염병 대비 의약품
·	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)
	이야프 . 이야이프 미 자
	의약품·의약외품 및 <u>장</u>

위 등 분배기준, 그 밖에 필요 비-----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정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40조의4(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 스템의 구축・운영 등)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발생 시 예방・관리・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 • 관리업무 의 전산화를 위하여 감염병환 자등 및 의료인력, 의약품・의 약외품・장비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(이하 "감염병 관리통합정보시스템"이라 한 다)을 구축 • 운영하여야 한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관 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 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소요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관 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・운

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

지원할 수 있다.

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・관리・보유할 수 있으며,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공 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.

- 1.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 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 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 보를 포함한다)
- 2. 감염병 치료내용 등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 예방・관리・ 치료 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 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
-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다.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-보건복지부장관, 시 · 도지사 또 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감염

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 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. ~ 11. (생 략)
- 12.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 | 12. -----·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 것

13. • 14. (생략) ② (생략) <신 설>

<신 설>

제49조의2(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제49조의2(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 · 조치) ① ------

1. ~ 11. (현행과 같음) 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--의료관계요원(이하 이 조에

서 "의료요원"이라 한다)----

- 13. 14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 1항제12호에 따라 의료요원을 동원할 때에 의료요원이 소진 되지 아니하도록 업무시간과 휴게시간, 휴일 등을 특별적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④ 제3항에 따른 의료요원의 종류, 동원의 기간, 절차, 업무 및 근로계약 등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 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 으로부터 <u>사회복지시설을 이용</u> 하는 어린이, 노인 등(이하 "감 염취약계층"이라 한다)을 보호 하기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 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 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65조(시·도가 부담할 경비) 다 저음 각 호의 경비는 시·도가 부담한다.

1. ~ 8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9. (생략)

제67조(국고 부담 경비) 다음 각 저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.
1. ~ 10. (생 략)
<신 설>

<u>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저</u>		
소득층,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		
<u> </u>		
② (현행과 같음)		
세65조(시·도가 부담할 경비)		
1. ~ 8. (현행과 같음)		
8의2. 시·도지사가 감염병 예		
방·관리 및 치료 등의 업무		
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신체적		
•정신적 보호 및 치료를 위		
하여 사용하는 경비		
9. (현행과 같음)		
세67조(국고 부담 경비)		
1. ~ 10. (현행과 같음)		
11. 국가가 감염병 예방・관리		

제70조의3(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, 예방·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재정적 지원을 <u>할</u>수 있 다.

② (생략)

제70조의4(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, 생활지원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

및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한
전문인력의 신체적·정신적 보
호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
<u>는 경비</u>
제70조의3(의료인 또는 의료기관
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)
①
하여야 한
 다.
 ② (현행과 같음)
제70조의4(감염병환자등에 대한
생활지원) ①
생활지원,
심리상담지원
· ②·③ (현행과 같음)